#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40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강선영·배현진·허성무

김대식 · 김용태 · 한기호

정성호 · 주호영 · 정동만

강대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,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「군수품관리법」 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·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·연구·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, 군수품·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·대부·양여 외에도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사용·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,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

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

조할 수 있으나,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

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

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 재산·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,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제2항·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1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의 제목 "(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)"을 "(군수품·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정부는"을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「군수품관리법」 또는 「국유재산법」"을 "「군수품관리법」,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"으로, "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"을 "군수품,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.
-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

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3(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) 국방기술품질원은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32조의2(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제32조의2(군수품・국유재산 및 대부 등) 정부는 국방기술품질 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「군수품관리법」 또는 「국유 재산법 | 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|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 용허가 ·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.

<u><신</u>설>

개 정 아

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 한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----------「군수품 관리법 .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-------군수품, 국유재산

또는 공유재산을-----

----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 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 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「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 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산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32조의3(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) 국방기술품질원은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.